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45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황 희·부승찬·박용갑

추미애 · 정성호 · 김병주

허 영·한민수·김준형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 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궁 및 공원"을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② 법률 제20012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 및 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 3항"으로 한다.

③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으로 한다.

④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 및 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 3항"으로 한다.

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생	제14조(취업지원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			
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			
하여 <u>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u>	<u>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의</u>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필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요하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2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			
인 중 전역 후 <u>3년</u> 이 지나지	<u>10년</u>		
아니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u><신</u>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u>① 취업</u>		
<u>설></u>	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복		
	무 경력과 역량 등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u>①</u> ~ <u>④</u> (생 략)	$\underline{2} \sim \underline{5}$ (현행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같음)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하는 <u>고궁 및 공</u> 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 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 2. (생략)
- 3. <u>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지원
- 4. ~ 6. (생략)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적용제외)
1.•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
4 ∼ 6 (혀해과 간음)